

맥아더와 극동국제군사재판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된 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과제였다..... 이 과제가 일본에서 전쟁 재개 능력을 없애고 전범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 되어야 한다.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

이상호(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인류가 역사라는 학문을 창출한 이후 이를 연구, 발전시키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그 행위의 적실성을 고구(考究)하고 이에 대해 미래의 행위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사를 통해 이러한 정의를 되새겨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에 대한 질곡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자는 허명에만 집착하고 있다. 철저한 과거 반성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역시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미국의 보호 하에 자국의 주권을 위탁하면서 무임안보승차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핵투하의 피해 국가로 위장하고 있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 아니 외면하다가 망각을 지나 왜곡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소위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일본인 학자들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위로라는 가식적 의견 개진으로 이러한 역사의 망각, 더 나아가 역사 왜곡까지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망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필자는 이를 미국의 일본 점령 이후 전쟁범죄자 처리에 대한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천황’에 대한 면죄부는 현재 일본 우익의 행동과 발언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관계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전후 일본의 전범 처리에 대해 맥아더기념관 문서¹⁾를 통해 당시의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이 어떻게 준비되고 처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맥아더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천황’의 전범 기소문제를 둘러싼 미국 워싱턴과 맥아더의 견해와 대응을 분석한다.

2. 2차 대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과 맥아더의 역할

전범재판의 필요성이 연합국 사이에 대두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였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은 후에 초대 연합국전범위원회(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²⁾ 위원장이 된 호주인 라이트(Lord Wright)경에 의해서였다. 1943년 런던에서 설립된 연합국전범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중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여 17개국으로 구성되었다.³⁾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은 1943년 10월 모스크바 선언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가해자들이 그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과 또한 범행이 특별한 지역적 연고를 가지지 않은 주요 전범들의 경우에는 연합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이 후자의 결정에 의해 구상된 것이다.⁴⁾ 그 후 1945년

1)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Blue Binder Series 문서철은 맥아더기념관 문서군 가운데 하나인 Record Group 9의 일부문서철이다. RG-9의 공식 명칭은 전문철(Collection of Messages)로 1945년부터 1951년까지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군에는 일본항복에 따른 작전보고서와 일본점령정책 및 주한미군과 맥아더사령부와의 전문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Blue Binder Series는 하드커버로 둘러싸인 진한 청색 바인더로 묶여 있는데 61개의 Binders에 총 9,500여장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문뿐만 아니라 편지, 비망록 등 맥아더와 그의 부관들이 가장 중요한 문서로 취급한 것을 모아놓았다. 보안등급은 최고기밀부터 기밀해제가 되지 않은 것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필자는 War Crimes(전쟁범죄) 파일을 분석하였다.

2) 국제연합은 1944년 10월 덤바턴오크스(Dumbarton Oaks)회의에서 설립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었고,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국제연합회의에서 국제연합헌장을 공식 채택했다. 따라서 1945년 4월 25일 이전에는 United Nations을 연합국으로 그 이후에는 유엔으로 명명한다.

3) Arnold C. Brackman,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London: Collins, 1990).

4) 박원순,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근현대사강좌』 통권 제17호, 1995, 근현대사연구회.

초 연합국전범위원회는 전쟁범죄에 대한 성격을 명문화했다.

1944년 7월 15일 연합국전범위원회는 위원회 지령 19호로 일본의 전쟁범죄 개시시기를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삼았다. 1945년 7월 27일 유엔전범위원회의 극동 및 아시아소위원회(Far Eastern and Pacific Subcommission)는 장교를 포함하여 100명의 일본군을 전범 명단으로 기재했다. 한편 중국인민정치회의에서는 7월 17일 ‘천황’ 히로히토(裕仁)를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당시 중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소련, 네덜란드 등은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프랑스는 유보적 입장에 있었고, 영국은 이에 대한 결정이 트루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⁵⁾

하지만 당시 미 국무차관이던 그루(Joseph C. Grew)는 ‘천황’의 전범기소에 대해 반대했다. 그루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1945년 8월 7일의 전문에 의하면 그는 ‘천황’이 전범으로서의 증거가 부족하고, 그가 군사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일 그를 전범으로 기소한다면 일본 국민 전체가 단합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맥아더와 그루사이에 어떠한 의견이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후 맥아더의 행동과 주장은 그루의 입장과 유사했다.

1945년 8월 16일 일본인 전범을 조사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대표단으로 유엔전범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유엔전범위원회 미국 측 위원인 호지슨(Hodgson)이 1945년 9월 1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전문에 따르면 유엔전범위원회가 작성한 일본의 전쟁범죄와 적대행위에 관한 요약제안서가 첨부되어 있다. 1945년 9월 12일 미국의 삼부조정위원회는 이 전문을 토대로 극동에서의 전범처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SWNCC 57/3으로 입안했다. 이 문서의 부속문서 D는 전쟁범죄 혐의자에 확인·체포·재판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지령문이다. 이 문서에서 합참은 ‘천황’의 경우 특별 지시가 고려중에 있으므로 전범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⁶⁾

일본에 대한 항복조인식이 거행된 지 10일이 지난 1945년 9월 12일 미국 합동

5) 에드워드 베르 지음, 『히로히토-신화의 뒤편』 (서울: 을유문화사, 2002).

6) “Report by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1945. 9. 1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Washington: U.S.G.P.O., 1971).

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일본인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군사법정이나 재판을 준비 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에서 적용될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위해 미국전범국(United States War Crimes Office)에서 3명의 직원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동 문서에는 주요 일본인 전범 명단이 제시되었는데, 총 44명으로 이 명단에는 처음부터 히로히토 ‘천황’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1945년 9월 22일 전쟁부는 맥아더에게 전범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17개조 조항으로 구성된 전문은 맥아더에게 부여된 권한 및 임무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17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천황’ 히로히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었다.

17조: ‘천황’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는 어떠한 행동도 특별한 지시 없이는 행하지 말 것.⁷⁾

1945년 10월 2일 일반참모부 준장 펠러즈(Bonner F. Fellers)는 맥아더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천황’ 히로히토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일본인에게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천황’을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조 기종전은 ‘천황’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 7백만 명의 일본군이 무기를 버렸고 이로 인해 미국이 무혈입성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즉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수십만의 미군사상자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천황’을 이용한 후에 전범으로 재판한다면 이는 일본인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만일 ‘천황’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전반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일본 국내의 혼란과 유혈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대규모 원정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11월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체포, 재판,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를 면제시킬 수는 없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히로히토가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미국정

7) War to CINCAFPAC(1945. 9. 2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부는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체포, 재판, 처벌하는 것에 대해 면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천황’으로서 히로히토 없이도 점령통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의 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안이 타당하다면 우방국 대부분이 요청할 것이다. 여러 사실을 검토한 후, 히로히토에 대한 재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들을 이른 시기에 수집해야 한다. 증거의 수집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⁸⁾

그러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침략전쟁, 둘째, 집단살해를 포함한 전쟁법규와 전쟁관습법의 위반,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한 가혹한 대우, 불필요한 파괴행위, 셋째, 전쟁전후에 민간인에 대한 추방, 노예화, 절멸, 집단살해와 종교·인종·정치적 이유로 박해하거나 국내법의 위반을 무시하고 구금하는 행위 등이다. 즉 전쟁범죄의 기준에 의하면 ‘천황’ 히로히토는 전범대상자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부의 애치슨은 일본천황이 미군의 점령에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천황이 머지않은 장래에 사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전범으로 지목될 수 밖에 없고, 또 일본인들이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믿는 지도자를 배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를 계속해서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히로히토에게 천황직을 사직하지 말라는 암시를 주어야 할 것이다.⁹⁾

한편 1946년 1월 22일 호주정부가 주요전범 62명을 선정해 미국에 통보했다. 호주가 제출한 주요 전범 명단에서도 그 가운데 7번째로 히로히토 ‘천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펠러즈 준장의 건의와 애치슨의 주장을 맥아더가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맥아더는 1월 24일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보낸 전문에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구체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전쟁 막바지에 히로히토는 단순한 자문 이상은 아니었다. 만일 히로히토를 기소할 시에는 점령 계획과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기소는 일본국민들 사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일본인들의 상징이다. 따라서 복수라는 항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세기가 지나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수십만 명의 지원병이 추가로 요구

8) “Washington(JCS) to CINCPAC ADV(1945. 11. 30)”,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9) “Washington(SD) to SCAP(1946. 1. 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된다. 따라서 히로히토에 대한 사면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관은 생각한다.¹⁰⁾

맥아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연합국 중 특히 소련과 영국이 ‘천황’을 전범자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전범자 리스트에는 ‘천황’이 첫머리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맥아더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즉 만일 미국이 영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져 ‘천황’을 재판에 회부한다면 주일미군은 장차 1백만 명의 군사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천황’이 기소되어 교수형에 처해진다면 일본 전역에 군정을 실시해야 하고, 게릴라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특히 맥아더는 일본 ‘천황’은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단지 군국주의적 관료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히로히토는 전쟁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던 완벽한 꼭두각시에 불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은 일이다. 그는 주변의 권유에 따랐을 뿐 스스로 결정할 입장이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도 내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종전도 내각이 결정했다.¹¹⁾

한편 ‘천황’의 기소를 둘러싸고 미 군부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무부는 중국, 영국, 소련에 각각 5명을, 그리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각각 3명의 국제군사법원의 구성원에 적합한 장교 내지는 민간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소 구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미국은 국제검사국의 미국 측 대표로 11월 2일 키난(Joseph B. Keenan)을 임명했다.

1946년 1월 19일 맥아더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한 직후,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ar East: IMFTE)이 미국·중국·영국·소련·호주·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인도·필리핀 등 11개국을 원고로 하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하여 28명의 피고를 하여 1946년 2월 1일 시작되었다.¹²⁾

재판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46년 2월 8일 미국의 위넛트(Winant) 주영미국대사와 애틀리(Attlee) 외무장관 사이의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10) "CINCAFPAC ADV(MacArthur) to WARCOS(1946. 1. 24)",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11) 에드워드 베르 지음, 앞의 책.

12) 朝日新聞 記者團 編, 노병식 譯, 『東京裁判』 上, 下 (서울: 태종출판사, 1983).

전쟁범죄자로 히로히토의 기소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따라서 히로히토의 전범재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호주의 주장 역시 영국의 조정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일본의 점령 책임을 맡고 있던 미국과 영국이 점령부담을 빌미로 ‘천황’에 대한 전범재판 회부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중일전쟁부터 시작해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15년 동안 아시아 각국인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다 준 장본인인 히로히토의 이름은 전범 기소장에 오르지 않았다.

한편 1946년 4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지령의 최종안을 맥아더에게 하달했다. 이 문서는 국무부가 1946년 4월 3일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ttee, FEC)에 제출한 문서이기도 했다. 이 문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지령을 좀 더 가다듬은 최종안으로 1945년 9월 22일의 문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나 협의 절차에 있어, 기존문서가 4대 강국의 협의를 존중하였던 데 반해 이 문서는 맥아더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맥아더에게 부여된 모든 전범에 대한 구금권한에서 히로히토는 배제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강조했다.

1946년 4월 28일 국제검사단은 A급 전범자 28명에 대한 기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본안심리가 5월 3일 개시되었다. 재판은 2년 반 동안 지리한 심리와 반론 그리고 재반론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제검사단은 일본의 범죄에 대해 공소사실로서 55개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 제출했다.

검사단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 끝에 1948년 11월 12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문은 전체 55개의 공소혐의에 대해 10개의 공소사실만을 인정했다. 특히 이 10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8개는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결국 1948년 12월 23일 A급 전범 가운데 도조 히데키, 히로타 고키(廣田弘毅)를 포함한 7명만이 교수형이라는 죄목으로 단죄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A급 전범은 12월 24일 수가모 감옥에서 석방됨으로써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폐정했다.

3. 망각에서 왜곡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A급 전범을 위주로 이루어진 국제전범재판이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정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쟁범죄자들의 죄상을 철저히 심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개시에서 발발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일본

의 최고 통수권자인 ‘천황’에 대한 면소(免訴)로 인해 오히려 인류의 발전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한 것이었다.

처벌받아야 할 인물은 면소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처벌 대상에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A급 전범은 도쿄재판에서 처리되었던 반면, B·C급 전범은 연합국 피해 당사국이 행사했다.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조선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기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모집된 조선인 청년은 3,000여명이었고 그 가운데 129명이 전범이 되었다. 이 가운데 23명이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처해졌다.

조선인에 대한 연합국의 처리 방안 가운데에서는 1945년 12월 11일과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지구 검사총장과 영국 당국과의 회담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한,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취급한다.’고 규정되었다. 우쓰미 아이코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인 감시원에게 처음부터 포로학대의 책임 추궁에 대한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떠맡길 요량으로 ‘포로를 학대하는 것은 조선인 부대로 일본인이 아니다’는 해외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도외시한 채, 일본은 현재 보수우익을 중심으로 도쿄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첫째, 도쿄재판에 대한 법률 적용 자체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상으로 위법하다는 논리와, 둘째, 연합국에 의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비판을 하려면 일본의 전쟁개시에 대한 불법성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즉 일본 스스로 전쟁법을 어겨가며, 기습공격으로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도쿄재판에 대한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는 일본의 외교적 저자세가 이러한 도쿄재판사관에 의해서 강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쿄재판사관’이란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승자의 입장에서 세워진 부당한 역사해석으로서 전쟁 중 일본국가가 한 행동을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일본인의 자존심을 상실시키는 역사관”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

13) 박원순,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역사비평』 계간 26호 (서울: 역사비평사, 1994).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일본은 이 조약의 약속을 이행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박원순에 따르면 이 평화조약에는 단순히 도쿄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측면을 넘어 전범의 수색, 체포, 기소, 처벌을 계속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재판을 둘러싼 문제점을 국내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하나는 아시아 피해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도쿄재판에서는 조직범죄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이나 재벌 보다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집중되었고, 마지막으로 도쿄재판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이 일본이 만주침략을 개시한 이후 저지른 전쟁범죄만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도쿄재판의 대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생겨난 피해이지,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¹⁴⁾

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전범에 대한 분류, 체포, 기소에 대해 배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냉전이 가시화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정의에 대한 실현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국가 이익으로 대체되었고, 결국 일본의 전범은 미국의 보호아래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 과거를 망각하며,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허버트 허쉬(Herbert Hirsh)는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조작, 은폐함으로써 기억을 조작한다고 간파한바 있다.¹⁵⁾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들은 허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억의 조작을 통해 과거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일반인의 기억에서 제거한 후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역사적 왜곡 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1989년 1월 히로히토는 89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전후 전쟁범죄의 행위를 사과하지도 않은 채 식물학자로 행세하며 지냈다. 그가 천수를 누리며 전쟁범죄에

14) 송충기,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의 비교」,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학 국제회의, 2002, 8.

15) Herbert Hirs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NC: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대한 재판을 피해간 배경에는 미국의 대일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를 집행하기 위해 ‘천황제’를 상징천황제로 바꾸어가며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려 했던 미국 지도층과 맥아더의 역할이 지대했다.

맥아더는 회고록에서 히로히토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천황’은 일본인 중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밴 인물이었다. 점령 후의 정치적 성공은 천황의 성실한 협조와 영향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¹⁶⁾

히로히토에 대한 맥아더의 평가가 개인적 입장에 대한 소신의 표출이었던지는 모르지만, 히로히토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가 ‘민주’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범 행위를 부정하며 비굴한 행적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전후 일본사회에서 맥아더 선풍에는 일본 ‘천황’을 전범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되었으리라. 또한 이러한 면죄부가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행위를 모두 기억에서 몰아내는 추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극동국제 군사재판의 적법성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쿄재판에 대해 맥아더는 후에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재판에 참석한 권위 있는 재판관들조차도 완전한 의견 일치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대 문명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이 군사재판만큼 성실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달리 없었다고 나는 확신한다.¹⁷⁾

과연 그럴까? 1952년 스가모 감옥에서 열린 칠석날 축제에는 다음과 같은 단가(短歌)가 적혀있었다.

천황도 이곳으로, 종신형으로
일본인에게 학을 뺐다, 재군비라니!¹⁸⁾

16)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17) Douglas MacArthur, *Ibid.*

18) 우쓰미 아이코 지음·이호경 옮김,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서울: 동아아시아, 2007).